

#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



가스안전공사는 정전기 제거 관련 LPG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, '03년 4.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3장 시설검사 공통 제2절 완성 · 정기검사  <u>(신 설)</u>	제3장 시설검사 공통 제2절 완성 · 정기검사  <u>제3-15조【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접지시설 검사방법】① 고시 제2-2-34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정전기 제거용 접지시설은 접지접속선을 위험장소 밖으로 연장하여 접지하거나, 접지시설이 위험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접속금구를 방폭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</u>  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정전기 제거용 접지시설의 설치방법은 별표 9와 같다.</u>	○ 고시 제2-2-34조의 규정에 의해 이충전설비의 정전기 제거 조치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.
부 칙(2003. 3.)  제1조【시행일】이 지침은 2003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  제2조【경과조치】① 법령 또는 고	부 칙(2003. 3.)  제1조【시행일】----- -----.  제2조【경과조치】① -----	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시에서 정한 시행일은 해당 법령 또는 고시에서 정한 시행일을 적용한다.</p> <p>② 이 지침 시행 전에 착공(설치) 되었거나, 기술검토 처리(신청 포함)된 시설의 검사 또는 기술 검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<u>제3조【지침폐지】</u> 다음의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.</p> <p>① ~ ⑥ (내용생략) <u>(신 설)</u></p>	<p>----- ----- -----. ②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3조【지침 등 폐지】</b> ① 다음의 ----- ---.</p> <p><b>1. ~ 6.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②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「업 피620-30087호 : 2002. 02. 28. : 정전기 제거용 접지시설 보완에 관한 지침 시급】의 업무 지시는 폐지한다.</b></p> <p><b>【별표 9】</b>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정전기 제거용 접지시설의 설치방법(제 3-15조 관련)</p> <p>1.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(벌크로리 포함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 정전기 제거용 접지시 설 설치방법 가. 적용대상 이 별표의 기준은 LPG충전 · 집단공급 · 저장 · 특정사용시 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LPG저장 · 특정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이상인 저장탱크가 설치된 시설에 한 한다. 나. 위험장소의 적용범위 이 별표에서 위험장소는 고압 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장 별첨 가. 위험장소구분</p>	<p>○ 지침개정과 동시에 기 업무지시 된 내용을 폐지하여 업무의 흐 름을 명확히 하기 위함.</p> <p>○ 고시 제2-2-34조의 규정에 의 해 이충전설비의 정전기 제거 조치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.</p> <p>○ 위험장소 구분도 별첨 참조.</p>
		2003년 3·4월호 27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	<p>도의 (1)용기충전소(자동차용 기 충전소 포함)에 관한 것을 적용한다. 이때 탱크(수평원통 형저장탱크)를 자동차에 고정 된 탱크로 본다.</p> <p>다. 접지시설 설치방법</p> <p>(1)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정 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시설 (접지봉, 접속선 및 접속금구) 을 위험장소 외의 장소까지 연장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하게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위험장소에 접속금 구가 있도록 할 경우에는 (2) 의 기준을 적용한다.</p> <p>(가)위험장소 외의 지역에서 접속금구의 연결이 가능 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 보하고 있어야 하고, 자동 차에 고정된 탱크 접지접 속선 및 충전시설 접지접 속선의 길이는 위험장소 외의 지역까지 연장이 가 능한 길이일 것.</p> <p>(나)접지접속선이 자동차가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는 접지접속선(자동 차에 고정된 탱크의 접 지접속선 포함)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금속플렉시 블호스 또는 금속관 내에 넣어 보호조치를 한 것일 것.</p> <p>(2)접지시설을 위험장소 내에 두고 접지하는 경우는 다음 의 기준에 접합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접지접속선을 접속하는 접속금구는 다음과 같은</p>	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	<p>구조이어야 한다.</p> <p>1)접지용 클램프를 접속할 수 있는 방폭구조의 접속장치로서, 클램프가 접속되는 부분은 전기불꽃 또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.</p> <p>2)접속금구의 전기기기류는 검정기관의 방폭성능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.</p> <p>(나)방폭형 접속금구는 가스설비실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방폭형 접속금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가 해당시설에 고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이 공급계약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.</p> <p><b>2. 검사 처리방법</b></p> <p>가. 2003. 1. 1. 이후 검사처리시에는 접지시설이 제1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.</p> <p>나. 접지접속선의 길이가 위험장소 외의 지역까지 연장하여 접속이 가능한 길이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지협소등으로 인하여 위험장소 내에 비방폭형 접속금구가 놓인 상태로 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.</p>	